ISSUE REPORT
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2021년 Vol.5
DR&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1. 4. 29. ~ 2021. 5.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 2021. 1. 12.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관련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4. 29.부터 2021. 5. 20.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하는 2021. 4. 29.자 보도자료(이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보도자료와 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도자료 및 주요 지침 개정안 내용 분석

보도자료는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①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③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①, ②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벌점 경감 및 누산기준 구체화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 상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등 4개 항목이 추가되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2개 항목이 수정되었는바*, 이에 맞춰 지침 개정안은 경감사유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 (신설항목) 피해구제, 입찰정보공개, 하도급거래 모법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업체 등
(수정항목)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위 6개 항목과 관련하여, 개정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대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 기준 수정]

개정 시행령 [별표3]의 내용	지침 개정안의 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 90%이상: 2점 경감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 70%이상 90%미만: 1점 경감	기준연도에 체결한 총 계약건수 중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계약건수의 비율을 말하며, 신규, 변경, 갱신계약 건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비율 기준 수정]

개정 시행령 [별표3]의 내용	지침 개정안의 내용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비율 50%이상: 1점 경감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비율 50%미만: 0.5점 경감	하도급대금 합계 중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합계의 비율을 말하며,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해구제비율 기준 신설]

개정 시행령 [별표3]의 내용	지침 개정안의 내용
• 피해구제비율이 100%: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초과 50%이하 경감 • 피해구제비율이 50%이상 100%미만: 해당 사건 벌점 중 25%이하 경감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금액 총액 중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공정위 시정명령, 법원의 판결 등으로 피해가 구제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서면직권실태조사에 따른 경고, 자진시정하여 향후재발방지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도 피해구제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찰정보공개 기준 신설]

개정 시행령 [별표3]의 내용	지침 개정안의 내용
• 입찰정보공개비율이 80%이상: 1점 경감 •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이상 80%미만: 0.5점 경감	입찰참가자 중 일부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입찰금액과 낙찰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개한 경우 입찰정보 미공개로 간주됩니다.

[기타] ⓔ 자율준수 프로그램 최우수는 2점, 우수는 1점 경감기준 신설
ⓕ 모범업체 선정 시에는 3점의 경감기준 신설

②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침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절차를 ① 검토대상 사업자 선정(입찰참가자격제한 – 5점 초과, 영업정지 – 10점 초과), ② 사전통지, ③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여부 검토, ④ 공정거래위원회 상정 및 심의,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이행결과 확인의 총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절차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⑤의 요청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중 '벌점 부과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기관'(1순위), '벌점 부과와 관련된 계약은 아니나 과거 계약체결 이력이 확인되는 기관'(2순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과거 입찰에 참여하였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이력이 확인되는 기관'(3순위)으로 나누어 우선순위에 따라 요청 대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은 기존에 내부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집행기준을 대외적으로 신설 · 공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시사점

이번 지침 개정안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벌점 경감에 있어서 불분명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관련 집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과 관련된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는바, 기준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는 개정 시행령과 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비율을 높이는 등 공정한 거래관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상모 변호사
공정거래, 형사, 민사, 기업자문
E smkoo@draju.com
T 02-3016-5349



이정란 변호사
공정거래, 기업자문, 행정소송
E jrlee@draju.com
T 02-3016-5365



장성경 변호사
공정거래, 기업자문, 건설/부동산
E skjang@draju.com
T 02-3016-8703



이경민 변호사
공정거래, 기업자문, 건설/부동산
E kmlee@draju.com
T 02-3016-874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8,10~13,15,16층
T. 02-563-2900 **E.**draju@draju.com **H.** www.draju.com